

2021 전산회계운용사 학습용

자격시험의 모든 것, 더존지식서비스센터  
<http://license.duzontv.com>

# 국가기술훈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모의고사

제4회 모의고사 및 문제풀이 해설서

DOUZONE

**DOUZONE**



7. 다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융자산의 재분류와 관련된 내용 중 잘못 기술된 것은 무엇인가?

- ①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다.
- ②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다.
- ③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다.
- ④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다.

8. 다음은 2013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2014년 중의 거래내용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처리 할 경우 2014년도의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감소하겠는가?

가. 2013년 말 매출채권은 ₩155,000이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3,720이다.

나. 2014년 1월 중 매출채권 ₩3,250이 회수불능으로 판명되어 해당 매출채권을 제거하였다.

다. 2013년 중 회수불능채권으로 처리한 매출채권 중 ₩850을 2014년 3월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라. 2014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127,900이고, 이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2,560으로 추정되었다.

- ① ₩1,240                      ② ₩2,090  
③ ₩2,100                      ④ ₩2,560

9. 투자부동산의 특성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 부동산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다음 부동산 중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 ①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 ② 미래에 개발 후 자가 사용할 부동산
- ③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면서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 ④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10. 다음은 2014년에 발생한 각 거래에 대하여 분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상품 ₩300,000을 주문하고, 그 계약금으로 현금 ₩100,000을 지급하였다.

나. 사무용비품 ₩100,000을 구입하고 2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다. 장부금액이 ₩100,000인 토지를 ₩100,000에 처분하고 대금은 2개월 만기어음으로 받았으며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라. 기계장비 ₩300,000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100,000을 2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 |                |          |             |          |
|----------------|----------|-------------|----------|
| ① 가. (차) 선 급 금 | ₩100,000 | (대) 현 금     | ₩100,000 |
| ② 나. (차) 비 품   | ₩100,000 | (대) 미 지 급 금 | ₩100,000 |
| ③ 다. (차) 미 수 금 | ₩100,000 | (대) 토 지     | ₩100,000 |
| ④ 라. (차) 선 급 금 | ₩100,000 | (대) 계 약 금   | ₩100,000 |

11. (주)대한은 2013년 1월 1일 ₩1,200,000을 주고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

수는 5년, 잔존가치는 ₩60,000으로 추정하였다. 회사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연수합계법을 이용하고 있다. 2014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다른 감가상각방법과 비교하면? 단, 정률법을 이용하는 경우 상각률은 0.451이며, 감가상각비 계산시 원미만은 절사한다.

- ① 정액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228,000 적다.
- ② 정액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152,000 많다.
- ③ 정률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154,318 적다.
- ④ 정률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161,200 많다.

12. 다음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경우 상각은 하지 않지만 손상징후의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가 수행되어야 하는 자산을 모두 고르면?

- |               |                    |
|---------------|--------------------|
| 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 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 다. 개발 중인 무형자산 | 라. 영업권             |

- ① 가
- ② 나, 라
- ③ 나, 다, 라
- ④ 가, 나, 다, 라

13. 12월 결산법인인 (주)상공의 2014년도 말 재고자산계정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사한 금액은 ₩200,000이었다. 다음의 자료를 고려할 경우 (주)상공의 2014년도 말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 |                                                                                             |
|---------------------------------------------------------------------------------------------|
| 가. 판매가격으로 표시된 다른 회사가 보유한 (주)상공의 위탁상품<br>: ₩100,000(판매가격의 20%는 매출이익임. 위탁자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임) |
| 나. 시용판매를 위하여 출고된 것(고객이 구매의사를 아직 표시하지 않음)<br>: ₩50,000(판매가 ₩50,000, 원가 ₩40,000)              |
| 다. 판매처로 운송중인 판매된 상품 : ₩20,000(원가임)<br>- FOB 도착지 인도기준. 도착일 : 2015.1.10                       |
| 라. (주)상공으로 운송중인 매입상품 : ₩30,000<br>- FOB 도착지 인도기준. 도착일 : 2015.1.5                            |

- ① ₩320,000
- ② ₩330,000
- ③ ₩340,000
- ④ ₩350,000

14. 다음은 사채의 발행, 상각 및 취득 등과 관련된 설명들이다. 옳은 것은?

- ① 자기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채에서 제거한다.
- ② 사채발행차금의 상각(환입)방법으로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 ③ 사채발행비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채기간에 걸쳐 상각하여야 한다.
- ④ 사채를 할인발행한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할 때 사채이자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27. 다음은 원가배부의 필요성과 목적에 관련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정보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재고자산, 매출원가, 일반관리비에 관련 원가를 배부하여야 한다.
- ② 제품의 판매가격 결정이나 신제품 개발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 이외에도 연구개발이나 판매보증 등의 원가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부문경영자나 종업원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문이나 활동별로 원가를 배부한다.
- ④ 최저입찰가격 결정이나 원가보상계약에 따른 입찰가격 또는 보상원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원가를 배부한다.

28. (주)대한은 보조부문인 동력부와 수선부, 제조부문인 절단부와 조립부가 있다. 보조부문에서 생산한 용역은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 항목  | 보조부문    |         | 제조부문     |          | 합계       |
|-----|---------|---------|----------|----------|----------|
|     | 동력부     | 수선부     | 절단부      | 조립부      |          |
| 수선비 | 10%     | -       | 30%      | 60%      | 100%     |
| 동력비 | -       | 20%     | 50%      | 30%      | 100%     |
| 부문비 | ₩66,000 | ₩75,000 | ₩205,000 | ₩104,000 | ₩405,000 |

직접배부법에 따라 제조부문인 절단부에 배부된 보조부문의 동력비는 얼마인가?

- ① ₩24,750                      ② ₩25,000  
③ ₩41,250                      ④ ₩50,000

29. ( )이란 정상품에 비하여 규격이나 품질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① 부산물                                          ② 공손품  
③ 작업폐물                                      ④ 완성품

30. (주)대한은 A, B 두 공정을 이용하여 #111제품과 #112제품 등을 생산하며, 제조간접비는 직접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111 제품의 A공정과 B공정의 제조간접비로 옳은 것은?

|                | A공정        | B공정        |
|----------------|------------|------------|
| 제조간접비          | ₩5,000,000 | ₩4,000,000 |
| 총직접노동시간        | 1,000시간    | 2,000시간    |
| #111 제품 직접노동시간 | 20시간       | 10시간       |
| #112 제품 직접노동시간 | 10시간       | 20시간       |

- | A공정 |          | B공정      |   |         |         |
|-----|----------|----------|---|---------|---------|
| ①   | ₩100,000 | ₩20,000  | ② | ₩90,000 | ₩10,000 |
| ③   | ₩20,000  | ₩100,000 | ④ | ₩10,000 | ₩90,000 |

31. 다음 중 결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부기관 등과의 원가보상계획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단일공정에서 생산된 낮은 판매가치를 갖는 제품이 연산품이다.
- ③ 단일공정에서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적용된다.
- ④ 순실현가치법은 분리점에서 개별 제품이 갖는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이다.

32. 다음은 종합원가계산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어느 한 부문의 자료이다. 재료비는 공정초기에 모두 발생하며, 가공비는 공정 전체에서 균일하게 발생한다.

평균법에 의하여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① 재료비(5,000단위), 가공비(4,900단위)      ② 재료비(4,000단위), 가공비(4,900단위)  
③ 재료비(5,000단위), 가공비(4,500단위)      ④ 재료비(4,000단위), 가공비(4,500단위)

가. 기초재공품 1,000단위 (가공비완성도 40%)  
나. 당기착수량 4,000단위  
다. 당기완성품 4,800단위  
라. 기말재공품 200단위 (가공비완성도 50%)

33. 다음 중 원가-조업도-이익(CVP)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① 일반적으로 고정비의 비율이 클수록 공헌이익률은 작다.
- ② 법인세를 고려하면 손익분기점은 증가한다.
- ③ 재무레버리지는 CVP분석과 깊은 관련이 있다.
- ④ 총원가 중에서 고정비의 비중이 크면 영업레버리지도 크다.

34. (주)상공은 현재 1대당 ₩250인 스마트폰을 월평균 400대 판매하고 있다. 1대당 변동비는 ₩150이고 매월 고정비는 ₩36,000이다. 판매관리자는 매달 광고비를 ₩10,000 증가시키면 ₩30,000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광고비 ₩10,000을 추가로 지불할 경우 순이익의 증감액은 얼마인가?

- ① -₩1,000                      ② ₩0  
③ ₩1,000                      ④ ₩2,000

35. (주)대한의 당기 직접노무원  
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노무원가의 임률차이와 효율  
차이는 얼마인가?

| 표준             | 실제              |
|----------------|-----------------|
| 표준생산수량 100단위   | 생산수량 105단위      |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40 | 총 직접노무원가 ₩3,820 |
| 시간당 직접노무원가 ₩80 | 총 직접노무원가 54시간   |

- |   | 임률차이    | 호율차이    |   | 임률차이    | 호율차이    |
|---|---------|---------|---|---------|---------|
| ① | ₩120 불리 | ₩320 유리 | ② | ₩120 유리 | ₩320 불리 |
| ③ | ₩500 불리 | ₩960 유리 | ④ | ₩500 유리 | ₩120 불리 |

36. 다음 중 표준원가계산에 의한 원재료 구입 및 투입의 회계처리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재료 투입시점에서 가격차이를 분리하면 모든 가격차이는 당기에 보고된다.
- ② 원재료 투입시점에서 가격차이를 분리하면 원재료 계정은 실제가격으로 기록된다.
- ③ 원재료 구입시점에서 가격차이를 분리하면 재료투입시점에서는 수량차이만 기록된다.
- ④ 원재료 구입시점에서 가격차이를 분리하면 원재료 계정은 표준가격으로 기록된다.

37. 다음은 활동기준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원가계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전통적 원가계산보다 적게 들어 경제적이다.
- ② 묶음수출활동원가는 작업준비원가, 구매주문원가 등과 같이 묶음 수에 비례하는 원가이다.
- ③ 활동은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은 활동을 소비한다는 사고는 전통적 원가계산 방법이다.
- ④ 제조간접비는 제조부분별로 상이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38.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대한 비교 설명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동원가계산의 당기손익은 판매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 ② 전부원가계산의 당기손익은 생산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 ③ 변동원가계산은 생산량 조절에 따른 이익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 ④ 전부원가계산은 조업도차이가 발생하나 변동원가계산은 발생하지 않는다.

39.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제품원가 계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동원가계산에서는 변동제조원가만을 제품원가로 계산한다.
- ② 전부원가계산에서는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원가 및 고정판매관리비를 제품원가로 계산한다.
- ③ 변동원가계산하의 기말재고액은 전부원가계산하의 기말재고액보다 항상 크다.
- ④ 전부원가계산에서는 변동제조간접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40.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based costing, ABC)이란, 활동별원가계산으로서 원가를 활동별로 계산하여 제품원가계산이나 의사결정에 사용한다. 이러한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생산과정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일반적으로 네가지 원가계층(cost hierarchy)로 구분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단위수준활동
  - ② 묶음(batch)수준활동
  - ③ 노무수준활동
  - ④ 설비수준활동



41. 다음은 간접세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간접세의 형식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가 된다.
- ② 간접세에 대한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 ③ 입법상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정한 조세이다.
- ④ 간접세의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42.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존기간은 몇 년인가? 단, 이월결산금공제로 인하여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① 3년                                  ② 5년  
③ 7년                                  ④ 10년

43. 다음 중 법인종류별 각 사업연도소득의 과세범위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리내국법인 : 국내외원천소득
- ② 비영리내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일정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③ 영리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 ④ 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일정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44.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위탁매매의 귀속시기는 그 위탁품을 수탁자에게 인도한 날의 익금으로 한다.
-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한다.
- ③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④ 상품 등의 시용판매시 상대방에게 인도한 날의 익금으로 한다.

45. 법인의 익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② 당기 이전에 익금으로 과세된 소득은 당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다.

46. 다음 세금과공과 중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 ①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가산금
- ②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 지방소득세
-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류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57.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법정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있다.
- ②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있다.
- ③ 부동산 중개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있다.
- ④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다.

58. 다음 자료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김상공씨의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이다. 공제받을 매입세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아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다.

가. 기계장치 구입 ₩30,000,000  
나. 원재료 구입 ₩33,000,000  
다. 2,000cc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구입 ₩15,000,000  
라. 토지관련 비용지출 ₩2,000,000  
마. 신용카드로 접대비지출 ₩1,000,000

- ① ₩6,100,000                      ② ₩6,200,000  
③ ₩6,300,000                      ④ ₩6,400,000

59.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인 김대한씨의  
2014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업종은 음식점업이  
아니며, 예정부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 매출내역(부가가치세 포함)(2014.1.1~12.31)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 ₩15,000,000
- 현금판매분 : ₩9,000,000

나. 매입내역(부가가치세 포함)(2014.1.1~12.31)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분 : ₩11,000,000
- 세금계산서 수령분 : ₩5,500,000

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공제율은 13/1,000으로 한다.

라.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30%이다.

- ① ₩720,000                      ② ₩525,000  
③ ₩270,000                      ④ ₩75,000

60. 다음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급가액과 세액은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 ②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③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 ④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DOUZONE**

## 국가기술자격

###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제4회 필기 모의고사 정답

| 재무회계 |    | 원가회계 |    | 세무회계 |    |
|------|----|------|----|------|----|
| 문항   | 정답 | 문항   | 정답 | 문항   | 정답 |
| 1    | ②  | 21   | ①  | 41   | ③  |
| 2    | ④  | 22   | ②  | 42   | ②  |
| 3    | ①  | 23   | ④  | 43   | ②  |
| 4    | ①  | 24   | ③  | 44   | ③  |
| 5    | ③  | 25   | ②  | 45   | ④  |
| 6    | ①  | 26   | ②  | 46   | ②  |
| 7    | ②  | 27   | ①  | 47   | ①  |
| 8    | ①  | 28   | ③  | 48   | ②  |
| 9    | ③  | 29   | ②  | 49   | ③  |
| 10   | ④  | 30   | ①  | 50   | ③  |
| 11   | ③  | 31   | ③  | 51   | ④  |
| 12   | ②  | 32   | ①  | 52   | ③  |
| 13   | ③  | 33   | ④  | 53   | ①  |
| 14   | ①  | 34   | ④  | 54   | ④  |
| 15   | ④  | 35   | ④  | 55   | ②  |
| 16   | ④  | 36   | ①  | 56   | ①  |
| 17   | ④  | 37   | ②  | 57   | ④  |
| 18   | ②  | 38   | ②  | 58   | ③  |
| 19   | ③  | 39   | ①  | 59   | ④  |
| 20   | ①  | 40   | ③  | 60   | ④  |

**DOUZONE**



2. 다음은 회계순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의 절차이다. 이를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은?

|             |         |        |
|-------------|---------|--------|
| 가. 수정 후 시산표 | 나. 수정분개 | 다. 역분개 |
| 라. 이월시산표    | 마. 결산분개 |        |

- ① 가 → 나 → 라 → 다 → 마                      ② 가 → 마 → 나 → 라 → 다  
 ③ 나 → 가 → 다 → 마 → 라                      ④ 나 → 가 → 마 → 라 → 다

풀이) 회계의 순환과정은

거래의 발생 → 분개 → 전기 → 수정전 시산표 → 수정분개(㉔) → 수정후 시산표(㉕) →  
 계정의 마감(결산분개) → 재무제표의 작성 → 역분개(기초재수정분개) 순으로 이뤄진다.  
 정답은 ④번이다.

3. 다음 중 수익의 이연 계정에 대한 예로 옳은 것은?

- ① 선수임대료                                              ② 선급비용  
 ③ 미수이자                                              ④ 미지급수수료

풀이) 수익의 이연이란 당기에 받은 수익 가운데 다음 회계기간에 속하는 수익(선수수익)을 차기로  
 이월하는 것(예: 선수임대료, 선수이자 등)을 말하며,  
 비용의 이연이란 당기에 지급한 비용 가운데 다음 회계기간에 속하는 비용(선급비용)을 차기로  
 이월하는 것(예: 선급보험료, 선납이자 등)을 말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수익과 비용의 발생 및 이연은 회계원칙 가운데 발생주의와 관련이 있다.

- ② 선급비용: 비용의 이연  
 ③ 미수이자: 수익의 발생  
 ④ 미지급수수료: 비용의 발생

4. 기업은 비용을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성격별 포괄손익계산서와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 항목 중 성격별 포괄손익계산서와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항목  
 이 아닌 것은?

- ① 매출원가                                              ② 수익  
 ③ 금융원가                                              ④ 법인세비용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기능별 분류법)에서는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하며,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 반면, 성격별 분류법에  
 서는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그 성격별로 통합하며,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97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 99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 100 문단 99의 분석내용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 101 비용은 빈도, 손익의 발생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 재무성과의 구성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세분류로 표시한다. 분석내용은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제공된다.
- 102 분석의 첫 번째 형태는 **성격별 분류**이다.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은 그 성격(예: 감가상각비, 원재료의 구입, 운송비, 종업원급여와 광고비) 별로 통합하며,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비용을 기능별 분류로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할 수 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
|---------------------|-----|
| 수익(revenue)         | X   |
| 기타 수익(other income) | X   |
|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 X   |
| 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 X   |
| 종업원급여비용             | X   |
|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 X   |
| 기타 비용               | X   |
| 총 비용                | (X)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X   |

- 103 분석의 두 번째 형태는 **기능별 분류법** 또는 ‘매출원가’법으로서,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이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 이 방법은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비용의 기능별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
|---------------------|-----|
| 수익(revenue)         | X   |
| 매출원가                | (X) |
| 매출총이익               | X   |
| 기타 수익(other income) | X   |
| 물류원가                | (X) |
| 관리비                 | (X) |
| 기타 비용               | (X)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X   |

- 104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 105 비용의 기능별 분류 또는 성격별 분류에 대한 선택은 역사적, 산업적 요인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두 방법 모두 기업의 매출 또는 생산 수준에 따라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연계하여 변동함을 시사한다. 각 방법이 상이한 유형의 기업별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서는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합한 표시방법을 경영진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시가 필요하다. 문단 104에서의 ‘종업원급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의 의미와 동일하다.

5.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감가상각비를 당기순이익에 가산해야 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 ①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내구성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가산한다.
- ② 자산의 하자보수비를 적립하기 위하여 가산한다.
- ③ 현금의 유출을 수반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한다.
- ④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이 지나치게 과대계상되므로 가산한다.

풀이) 영업활동 현금흐름 계산시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은 발생기준 손익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금흐름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표적인 항목이 감가상각비가 있다.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된 손익이 발생기준 손익에 포함되어 있다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할 때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영업활동 현금흐름 계산시 조정해야 할 영업활동과 무관한 손익

|                                  |                                 |
|----------------------------------|---------------------------------|
| 현금흐름이 없는 손익                      |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손익, 자산의 손상차손(환입) 등 |
| 현금흐름이 있는 손익으로<br>투자활동·재무활동 관련 손익 | 자산의 처분손익, 부채의 상환손익 등            |

6. 다음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 항목만을 모아 놓은 것은?

|                  |                |               |
|------------------|----------------|---------------|
| 가. 당좌예금          | 나. 직원 가불금      | 다. 정기예금(1년만기) |
| 라. 환매채(90일 환매조건) | 마. 선일자수표(매출대금) | 바. 배당금 지급통지표  |
| 사. 우편환증서         | 아. 타인발행 약속어음   |               |

- ① 가, 라, 바, 사
- ② 가, 나, 라, 바, 사
- ③ 가, 다, 라, 바, 사
- ④ 가, 나, 다, 바, 사, 아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 통화
- (2) 통화대용증권  
타인(동점)발행수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송금환증서, 배당금지급통지표, 공/사채만기이자표, 국고지급통지서, 만기된 어음, 일람급여음 등 (일람급여음: 어음의 만기일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어음 소지인이 어음을 지급제시 하면 바로 그날 결제해주어야 하는 어음)
- (3) 소액현금
- (4) 당좌예금, 보통예금
- (5) 현금성자산
  - ① 취득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 ② 취득당시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 ③ 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인 환매채(RP; Repurchase Agreement)
  - ④ MMF, MMDA와 같은 초단기수익증권

※ 참고

- 나. 직원 가불금: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에 해당한다.
- 다. 정기예금(1년 만기):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한다.
- 마. 선일자수표: 수표의 실제발행일이 수표상의 발행일보다 앞에 오는 수표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수표상의 발행일이 오기 전에 수표를 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형식은 수표이나 회계상 성격은 어음과 유사하다.
- 아. 타인발행 약속어음: 받을어음에 해당한다.

7. 다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융자산의 재분류와 관련된 내용 중 잘못 기술된 것은 무엇인가?

- ①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다.
- ②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다.
- ③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다.
- ④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다.

풀이) 최초인식 시점 이후에 어떠한 금융상품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②번이다. 보기①번은 문단 50D 참조, 보기③번과 보기④번은 문단 50E 참조.

※ 참고: 2021년 현재 금융자산의 재분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문단번호 10에서 70까지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되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수정목록 16-2) (2015년 기준)

재분류

50 당기손익인식항목과 관련한 재분류는 다음과 같다.

- (1) 파생상품은 보유기간 또는 발행 이후 기간 중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하거나,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분류 변경할 수 없다.
- (2)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은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 (3) 금융자산을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며, 문단 50B나 50D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최초인식시점 이후에 어떠한 금융상품도 당기손익인식항목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보기②번)

50A 다음의 상황변화는 문단 50에서 의미하는 재분류가 아니다.

- (1)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었던 파생상품이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2)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으로 되는 경우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문단 45에 따라 보험회사가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

50B 문단 50(3)이 적용되는 금융자산(문단 50D에서 설명되는 유형의 금융자산은 제외)은 드문 상황의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다.

52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재분류하고 이러한 매도 또는 재분류가 문단 9의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유 중인 모든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다. 이러한 재분류에서 발생하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문단 55(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가. 2013년 말 매출채권은 ₩155,000이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3,720이다.

나. 2014년 1월 중 매출채권 ₩3,250이 회수불능으로 판명되어 해당 매출채권을 제거하였다.

다. 2013년 중 회수불능채권으로 처리한 매출채권 중 ₩850을 2014년 3월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라. 2014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127,900이고, 이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2,560으로 추정되었다.

풀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4년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시 대손상각비 ₩1,240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매출채권 a/c |         |        |         | 대손충당금 a/c |       |      |       |
|----------|---------|--------|---------|-----------|-------|------|-------|
| 가.기초     | 155,000 | 나.대손발생 | 3,250   | 나.대손발생    | 3,250 | 가.기초 | 3,720 |
|          |         | 당기회수   | xxx     |           |       | 다.환입 | 850   |
| 당기발생     | xxx     | 라.기말   | 127,900 | 라.기말      | 2,560 | 기말설정 | 1,240 |
|          | xxx     |        | xxx     |           | 5,810 |      | 5,810 |

나. (차) 대 손 충 당 금 ₩3,250 (대) 매 출 채 권 ₩3,250

다. (차) 현 금 850 (대) 대손충당금환입 850

라. (차) 대 손 상 각 비 1,240<sup>※1)</sup> (대) 대 손 충 당 금 1,240

※1) 기말대손상각비 = ₩2,560(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1,320(대손충당금 설정전 잔액)<sup>※2)</sup>

※2) 대손충당금 설정 전 잔액 = ₩3,720(기초) - ₩3,250(당기 발생) - ₩850(환입)

9. 투자부동산의 특성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 부동산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다음 부동산 중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①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② 미래에 개발 후 자가 사용할 부동산

③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면서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④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풀이) ③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분류(문단번호 8)의 예로 표시되어 있다. ①, ②, ④번은 투자부동산이 아닌 항목의 예(문단번호 9)이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수정목록 16-1반영) (2015년 기준)

#####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의 분류

6 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해당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리스이용자가 인식한 자산을 문단 33~55에서 규정하는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이 분류 대안은 각 부동산 별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운용리스로 보유 중인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 어느 하나에라도 이 분류 대안을 사용한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문단 74~78의 요구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7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투자부동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과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이러한 특성에 의하여 투자 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이 구별된다.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또는 관리목적에 부동산의 사용)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은 해당 부동산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나 공급과정에서 사용된 다른 자산에도 귀속된다. 자가사용부동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 적용한다.

8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예이다.

(1)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2)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만약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3) 직접 소유(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보기③번)
- (4)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 (5)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

9 다음은 투자부동산이 아닌 항목의 예이며, 따라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보기①번)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참조). 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에 판매하거나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
- (2)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보기④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참조)
- (3) 자가사용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참조).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미래에 개발 후 자가사용할 부동산 (보기②번),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종업원이 시장가격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을 포함한다.
- (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5)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10. 다음은 2014년에 발생한 각 거래에 대하여 분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 가. 상품 ₩300,000을 주문하고, 그 계약금으로 현금 ₩100,000을 지급하였다.
- 나. 사무용비품 ₩100,000을 구입하고 2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 다. 장부금액이 ₩100,000인 토지를 ₩100,000에 처분하고  
대금은 2개월 만기어음으로 받았으며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 라. 기계장비 ₩300,000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100,000을 2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 ① 가. (차) 선 급 금 ₩100,000 (대) 현 금 ₩100,000
- ② 나. (차) 비 품 ₩100,000 (대) 미 지 급 금 ₩100,000
- ③ 다. (차) 미 수 금 ₩100,000 (대) 토 지 ₩100,000
- ④ 라. (차) 선 급 금 ₩100,000 (대) 계 약 금 ₩100,000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라. (차)선급금 ₩100,000 (대)미지급금 ₩100,000

11. (주)대한은 2013년 1월 1일 ₩1,200,000을 주고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60,000으로 추정하였다. 회사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연수합계법을 이용하고 있다. 2014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다른 감가상각방법과 비교하면? 단, 정률법을 이용하는 경우 상각률은 0.451이며, 감가상각비 계산시 원미만은 절사한다.

- ① 정액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228,000 적다.
- ② 정액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152,000 많다.
- ③ 정률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154,318 적다.
- ④ 정률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161,200 많다.

풀이) 정답은 ③번이다.

2014년 말 연수합계법에 의한 감가상각누계액은 정액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228,000 많다.

연수합계법에 의한 2011년 말 감가상각누계액 ((1)+(2)) = ₩684,000

(1) 2010년 감가상각비 = (1,200,000 - 60,000) × 5년/15년 = ₩380,000

(2) 2011년 감가상각비 = (1,200,000 - 60,000) × 4년/15년 = ₩304,000

정액법에 의한 2011년 말 감가상각누계액 ((1)+(2)) = ₩456,000

(1) 2010년 감가상각비 = (1,200,000 - 60,000) ÷ 5년 = ₩228,000

(2) 2011년 감가상각비 = (1,200,000 - 60,000) ÷ 5년 = ₩228,000

정률법에 의한 2011년 말 감가상각누계액 ((1)+(2)) = ₩838,320

(1) 2010년 감가상각비 = 1,200,000 × 0.451 = ₩541,200

(2) 2011년 감가상각비 = (1,200,000 - 541,200) × 0.451 = ₩297,120

| 감가상각 방법 |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
|---------|-----------------------------------------------------------------------------------------|----------|----------|
| 감가상각누계액 | ₩838,320                                                                                | ₩684,000 | ₩456,000 |
| 비 고     | 정률법이 연수합계법보다 ₩154,320만큼 크고,<br>연수합계법이 정액법보다 ₩228,000만큼 크고,<br>정률법이 정액법보다 ₩382,320만큼 크다. |          |          |

12. 다음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를 경우 상각은 하지 않지만 손상징후의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가 수행되어야 하는 자산을 모두 고르면?

- |               |                    |
|---------------|--------------------|
| 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 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 다. 개발 중인 무형자산 | 라. 영업권             |

- ① 가
- ② 나, 라
- ③ 나, 다, 라
- ④ 가, 나, 다, 라

풀이) 정답은 ②번이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일년에 한번은 손상검사를 한다.(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번호 8~1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회수가능성 · 손상차손

111 무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는 자산의 장부금액의 검토시기와 방법, 자산의 회수가능액의 결정방법과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시기를 설명하고 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 손상되었을 수 있는 자산의 식별

8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문단 12~14에서는 손상차손이 생겼을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상차손이 존재한다는 징후가 없으면 문단 10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9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0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나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를 매년 같은 시기에 수행한다면 연차 회계기간(이하 '회계연도'라 한다) 중 어느 때에라도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무형자산은 각기 다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러한 무형자산을 처음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한다.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문단 80~99에 따라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한다.

13. 12월 결산법인인 (주)상공의 2014년도 말 재고자산계정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시한 금액은 ₩200,000이었다. 다음의 자료를 고려할 경우 (주)상공의 2014년도 말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 가. 판매가격으로 표시된 다른 회사가 보유한 (주)상공의 위탁상품  
: ₩100,000(판매가격의 20%는 매출이익임. 위탁자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임)
- 나. 시용판매를 위하여 출고된 것(고객이 구매의사를 아직 표시하지 않음)  
: ₩50,000(판매가 ₩50,000, 원가 ₩40,000)
- 다. 판매처로 운송중인 판매된 상품 : ₩20,000(원가임)  
- FOB 도착지 인도기준. 도착일 : 2015.1.10
- 라. (주)상공으로 운송중인 매입상품 : ₩30,000  
- FOB 도착지 인도기준. 도착일 : 2015.1.5

① ₩320,000

② ₩330,000

③ ₩340,000

④ ₩350,000

풀이) (주)상공의 재고자산 = (1) + (2) = ₩340,000

(1) 창고 실사금액 ₩200,000

(2) 창고 외 보관금액 = ① + ② + ③ = ₩140,000

① 위탁상품 ₩80,000

(판매가액 ₩100,000 가운데 매출이익 ₩20,000(판매가격×20%)을 차감한 금액)

② 시용판매상품 ₩40,000

③ FOB 도착지 인도기준으로 판매처에 운송중인 미판매 상품 ₩20,000

④ FOB 도착지 인도기준으로 판매처로부터 운송중인 미착 상품 ₩0

(매입한 상품이 도착하기 전이므로 (주)상공의 재고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14. 다음은 사채의 발행, 상각 및 취득 등과 관련된 설명들이다. 옳은 것은?

① 자기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채에서 제거한다.

② 사채발행차금의 상각(환입)방법으로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③ 사채발행비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채기간에 걸쳐 상각하여야 한다.

④ 사채를 할인발행한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할 때 사채이자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① 자기사채란 사채발행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사채의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사채의 조기상환에 해당하므로 사채를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②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사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한다.

③ 사채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사채발행비와 같이 사채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사채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거나 사채할증발행차금에서 차감한다.

④ 사채를 할인발행한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과 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액면이자는 동일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금융부채의 제거

39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 금융부채의 제거(문단 39~42)

AG57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한다.

- (1)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현금, 그 밖의 금융자산, 재화 또는 용역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부채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
-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1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우(채무자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 조건은 여전히 충족될 수 있다).

AG58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당해 금융상품을 재매입한다면, 발행자가 당해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 조성자이거나 당해 금융상품을 단기간 내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당해 금융부채는 소멸한다.

#### 유효이자율

AG5 이미 발생한 대손을 반영하여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이러한 대손은 금융자산의 추정 현금흐름에 반영한다.

AG6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의 계산에 반영되는 수수료, 지급되었거나 수취한 포인트, 거래원가 또는 기타의 할증액이나 할인액(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을 당해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동안 상각한다. (이하 생략)

#### 15. (주)상공은 100명의 종업원에게 1년에 5일의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가.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는 다음 1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보상 없이 소멸한다.

나. 유급휴가는 당해연도에 부여된 권리가 먼저 사용된 다음 직전연도 이월된 권리가 사용된다.

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미사용 유급휴가는 종업원당 2일이다.

라. 과거 경험상 2015년 중에 종업원 92명이 사용할 유급휴가일수는 인당 연간 5일 이하로 추정되며, 나머지 8명이 사용할 유급휴가는 인당 연간 6.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1일당 ₩50,000이라고 가정할 경우, 회사가 2014년 12월 31일에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① ₩0

② ₩120,000

③ ₩300,000

④ ₩600,000

풀이) 정답은 ④번이다.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8명 \times (6.5일 - 5일) \times ₩50,000 = ₩600,00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번호 16~17 사례 참고

92명의 누적유급휴가는 2015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sup>1)</sup>되므로 2014년 말에 92명의 누적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인식할 부채가 없으며<sup>※1)</sup>, 나머지 8명에 대한 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예상원가를 부채(미지급비용)와 비용(단기종업원급여)로 인식한다.

※1) 당해연도에 부여된 권리가 먼저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전연도에서 이월된 미사용유급휴가 2일은 소멸될 것이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 단기유급휴가

13 문단 11에 따른 유급휴가 형식의 단기종업원급여의 예상원가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확대하는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한다.

(2) 비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다.

14 기업은 연차휴가, 병가, 단기장애휴가, 출산·육아휴가, 배심원 참여, 병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종업원의 휴가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이 유급휴가는 누적 유급휴가와 비누적 유급휴가로 구분한다.

15 누적 유급휴가는 당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이 누적 유급휴가는 가득되거나(즉, 종업원이 퇴사하면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가득되지 않을(즉, 종업원이 퇴사하면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을) 수 있다. 기업의 채무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는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생긴다.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가득되지 않은 누적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16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미사용 유급휴가가 누적되어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가 금액으로 측정한다.

17 문단 16에서 정한 방법은 급여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만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지급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많은 경우에, 미사용 유급휴가와 관련한 중요한 채무가 없다는 추정을 하기 위해 상세한 계산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급병가에 대한 채무는 미사용 유급병가를 유급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공식 또는 비공식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중요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문단 16과 17에 대한 사례

종업원 100명에게 1년에 5일의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유급병가를 주고 있으며, 미사용 유급병가는 다음 1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급병가는 해당 연도에 부여된 권리를 먼저 사용한 다음 직전 연도에서 이월된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후입선출법). 20X1년 12월 31일 현재 미사용 유급병가는 종업원 1명에 평균 2일이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X2년도 중에 종업원 92명이 사용할 유급병가일수는 5일 이하, 나머지 8명이 사용할 유급병가일수는 평균 6.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미사용 유급병가에 대해 추가로 12일(1.5일×8명)분의 병가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은 12일분의 유급병가에 상응하는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18 비누적 유급휴가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기에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는 소멸되며 관련 종업원이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다. 이 경우는 주로 유급병가(미사용 유급병가로 미래에 받게될 유급병가에 대한 권리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출산·육아휴가와 유급 배심원참여병역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관련 급여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16. (주)한국은 자사가 발행한 주식 100주(1주당 액면가액 ₩100)를 1주당 ₩120에 취득, 보유하였다. 이 중 30주를 당기에 1주당 ₩150에 처분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에 처분시의 적절한 분개는?

- |          |   |        |              |        |
|----------|---|--------|--------------|--------|
| ① (차) 현금 | 금 | ₩4,500 | (대) 자기주식     | ₩4,500 |
| ② (차) 현금 | 금 | ₩4,500 | (대) 단기매매금융자산 | ₩3,600 |
|          |   |        | 단기매매금융자산     | ₩900   |
|          |   |        | 처분이익         |        |
| ③ (차) 현금 | 금 | ₩4,500 | (대) 자기주식     | ₩3,600 |
|          |   |        | 투자자산처분이익     | ₩900   |
| ④ (차) 현금 | 금 | ₩4,500 | (대) 자기주식     | ₩3,600 |
|          |   |        | 자기주식처분이익     | ₩900   |



18. 다음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계변경의 속성상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 ②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항상 재무제표의 정보이용자를 위하여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오류의 누적효과를 계산한 후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 ③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새로운 추정치를 당기와 미래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 ④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계속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풀이) 문단 4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며,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하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의 변경

- 34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추정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추정의 수정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보기③번)
- 35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보기①번)
- 36 문단 37이 적용되는 회계추정의 변경을 제외한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는 다음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보기③번)
  - (1)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 (2)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

오류

- 41 오류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표시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포함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당기 중에 발견한 당기의 잠재적 오류는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전에 수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기오류는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한다(문단 42~47 참조).
- 42 문단 4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한다.
  - (1)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 (2)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

소급재작성의 한계

- 43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보기④번)



20. 다음 중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는 모두 지분법을 적용한다.
- ②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제표로 표시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한다.
- ③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어떤 기업이 그 다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본다.
- ④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본다.

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용어의 정의

4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보기②번)

별도재무제표: 기업이 이 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

6 별도재무제표는 문단 8~8A에서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하여 표시하거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7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참여자로서 투자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가 아니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1)에 따라 연결이 면제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2011년 개정)의 문단 17에 따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 그 기업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만을 재무제표로 작성할 수 있다.

별도재무제표의 작성

10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1), (2), (3)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3)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법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된 투자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의 측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하지 않는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B6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할 때, 피투자자의 보통주와 같이 보유자에게 비례 의결권을 제공하는 지분상품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은 명백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결정을 바꾸는 추가 약정이 없다면, 지배력을 평가할 때 누가 피투자자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하는 충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문단 B34~B50 참조). 가장 단순한 경우, 다른 요소가 없다면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보기③번)

###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가지는 경우

B38 투자자는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힘을 가질 수 있다.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다음 예에 따라 힘을 가질 수 있다. (보기④번)

- (1)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 (보기④번) (문단 B39 참조)
- (2)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문단 B40 참조)
- (3) 투자자의 의결권(문단 B41~B45 참조)
- (4) 잠재적 의결권(문단 B47~B50 참조)
- (5) 위 (1)~(4)의 조합

### 다른 의결권 보유자와의 계약상 약정

B39 투자자가 계약상 약정이 없으면 자신에게 힘을 부여할 충분한 의결권이 없더라도,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으로 투자자에게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게 할 수 있다. (보기④번) 그러나 어떤 계약상 약정은 투자자가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할 때 다른 의결권 보유자를 지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개요

### 지분법

IN8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지분법을 이용한다. 종속기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비록 그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와 같이 기술되지 않더라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이용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분법의 사용을 선택할 수 있다.

※ 지분투자 유형과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회계처리

| 지분투자 유형 | 영향력 정도  | 연결재무제표<br>· 개별재무제표 적용 회계 | 별도재무제표 적용 회계                 |
|---------|---------|--------------------------|------------------------------|
| 종속기업투자  | 지배력     | 연결회계                     | 원가법, 금융자산회계,<br>지분법 중 한가지 선택 |
| 공동기업투자  | 공동지배력   | 지분법                      |                              |
| 관계기업투자  | 유의적 영향력 | 지분법                      |                              |



## ※ 원가함수의 추정방법

원가함수란 조업도와 원가와와의 관계를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원가추정의 추정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다.

- (1) 공학적 방법: 다른 추정방법들과 달리 과거의 원가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공정이나 생산설비 등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투입물과 산출물간의 관계를 계량화하여 추정하는 방법
- (2) 회귀법: 기업의 여러 부서로부터 수집된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
- (3) 계정분석법: 분석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각 계정에 기록된 원가를 분석하여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  
이 방법에서는 먼저 원가를 변동원가, 고정원가로 분류하여 총변동비와 총고정비를 파악한 후 총고정비는 총액을 원가 추정액으로, 총변동비는 조업도 수준으로 나눈 값(단위당 변동비)을 원가함수의 추정치로 사용한다.
- (4) 고저점법: 최고조업도와 최저조업도의 원가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최소 두 보고기간의 원가와 조업도 자료가 필요하다.
- (5) 산포도법: 조업도를 독립변수로, 총원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그래프상에 과거의 각 조업도에서 발생한 원가들을 점으로 표시한 산포도를 그린 후 이 점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선을 찾아내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
- (6) 회귀분석법: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선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
  - ① 단순회귀분석법  
하나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회귀분석법
  - ② 다중회귀분석법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 여러 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회귀분석법

## 24. 다음 중 제조경비의 계산 및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선비, 운반비, 잡비, 외주가공비 등을 말한다.
- ② 간혹 전월 선급액이나 당월 미지급액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당월지급액 + (전월선급액 + 당월 미지급액) - (당월선급액 + 전월미지급액)'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월의 소비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③ 그 달의 소비액을 그 달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선급액이라는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④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당월소비액과 당월지급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풀이)** 그 달의 소비액을 그 달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선급액이 아니라 **당월미지급액**이라는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여야 한다.

정답은 ③번이다.

25. 다음은 원가배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좀 더 정확한 원가배분으로 인해 개선되는 효익이 원가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보다 커야 한다.
- ② 보조부문은 직접 제품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용역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 ③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인식하는 방법을 상호배분법이라 한다.
- ④ 보조 부문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원가에서 수익을 차감한 순원가를 배분한다.

풀이) 보조부문은 직접 제품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제품생산에 기여하며, 제조부문에도 용역을 제공하지만 보조부문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기도 한다. 이처럼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고려한 원가배부 방법이 상호배분법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6. 다음 중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실제원가계산에 비해 제조간접비 배부는 빨라지므로 추가적인 회계처리가 필요 없다.
- ② 예정배부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정이 필요하다.
- ③ 배부차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필요치 않다.
- ④ 제품 단위당원가의 변동에 대응할 수 없다.

풀이) 정답은 ②번이다.

①번, ③번: 실제원가계산에 비해 제조간접원가 배부는 빨라지나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과 예정배부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배부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④번: 기초에 설정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기중에 계속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개별원가 계산에서 월별로 제품원가를 계산할 때 발생하는 제품단위당원가의 변동을 극복할 수 있다. (제품 단위당원가의 변동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은 실제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의 장·단점

| 장점                                                                                                                                                                     | 단점                                                                                                                                                                |
|------------------------------------------------------------------------------------------------------------------------------------------------------------------------|-------------------------------------------------------------------------------------------------------------------------------------------------------------------|
| (1)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므로 기중에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제품원가계산이 가능하다.<br>(2) 기초에 설정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기중에 계속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개별원가 계산에서 월별로 제품원가를 계산할 때 발생하는 제품단위당원가의 변동을 극복할 수 있다. | (1)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초에 제조간접원가 예산과 배부기준 수를 추정하여야 한다.<br>(2)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므로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과 예정배부액 간의 배부차이가 발생하며, 이 배부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

27. 다음은 원가배부의 필요성과 목적에 관련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정보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재고자산, 매출원가, 일반관리비에 관련 원가를 배부하여야 한다.
- ② 제품의 판매가격 결정이나 신제품 개발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 이외에도 연구개발이나 판매보증 등의 원가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부문경영자나 종업원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문이나 활동별로 원가를 배부한다.
- ④ 최저입찰가격 결정이나 원가보상계약에 따른 입찰가격 또는 보상원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원가를 배부한다.

풀이) 정답은 ①번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의 제조·생산과 관계없이 판매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로, 원가배부의 필요성이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 ※ 원가배부의 목적

- (1) 외부보고를 위한 재고자산과 이익의 측정  
기업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재고자산의 가액과 매출원가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가를 배부한다.
- (2) 최적의 자원배분을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  
회사의 계획수립이나 자원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해 관련된 원가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원가정보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원가뿐만 아니라 간접원가를 포함한 관련원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 경영자는 이러한 원가정보에 기초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3) 제품가격 결정 및 제품선택 의사결정  
합리적 원가배부를 통해 적정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제품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고 매출에 기여할 수 있다.
- (4) 동기부여 및 성과평가  
원가배부는 경영자와 종업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 등의 행동이 조직의 목적과 일치하도록 합리적 원가배부를 해야 하며, 배부된 원가는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28. (주)대한은 보조부문인 동력부와 수선부, 제조부문인 절단부와 조립부가 있다. 보조부문에서 생산한 용역은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 항목  | 보조부문    |         | 제조부문     |          | 합계       |
|-----|---------|---------|----------|----------|----------|
|     | 동력부     | 수선부     | 절단부      | 조립부      |          |
| 수선비 | 10%     | -       | 30%      | 60%      | 100%     |
| 동력비 | -       | 20%     | 50%      | 30%      | 100%     |
| 부문비 | ₩66,000 | ₩75,000 | ₩205,000 | ₩104,000 | ₩405,000 |

직접배부법에 따라 제조부문인 절단부에 배부된 보조부문의 동력비는 얼마인가?

- ① ₩24,750                      ② ₩25,000  
③ ₩41,250                      ④ ₩50,000



31. 다음 중 결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부기관 등과의 원가보상계획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단일공정에서 생산된 낮은 판매가치를 갖는 제품이 연산품이다.
- ③ 단일공정에서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적용된다.
- ④ 순실현가치법은 분리점에서 개별 제품이 갖는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이다.

풀이) ③번이 가장 적절한 설명으로 정답은 ③번이다.

②번: 연산품은 결합제품 가운데 상대적으로 판매가치가 큰 제품을 말하며, 이보다 판매가치가 작은 제품을 부산물이라 한다.

④번: 순실현가치(NRV)법은 분리점에서의 순실현가치(최종판매가액-추가원가-판매비)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원가를 부담할 능력이 많은 순실현가치가 큰 제품에 상대적으로 많은 결합원가가 배부된다.

분리점에서 개별 제품이 갖는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은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에 대한 설명이다.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를 계산할 때는 판매량이 아닌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32. 다음은 종합원가계산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어느 한 부문의 자료이다.

재료비는 공정초기에 모두 발생하며, 가공비는 공정전체에서 균일하게 발생한다. 평균법에 의하여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 기초재공품 1,000단위 (가공비완성도 40%)  
 나. 당기착수량 4,000단위  
 다. 당기완성품 4,800단위  
 라. 기말재공품 200단위 (가공비완성도 50%)

- ① 재료비(5,000단위), 가공비(4,900단위)      ② 재료비(4,000단위), 가공비(4,900단위)
- ③ 재료비(5,000단위), 가공비(4,500단위)      ④ 재료비(4,000단위), 가공비(4,500단위)

풀이)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환산량은 ① 5,000단위, 4,900단위이다.

| <평균법>        | 물량흐름  | 완성품환산량 |       |
|--------------|-------|--------|-------|
|              |       | 직접재료원가 | 가공비   |
| 기초 재공품 (40%) | 1,000 |        |       |
| 당기 착수량       | 4,000 |        |       |
| 합계           | 5,000 |        |       |
| 완성품          | 4,800 | 4,800  | 4,800 |
| 기말재공품 (50%)  | 200   | 200    | 100   |
| 합계           | 5,000 | 5,000  | 4,900 |

33. 다음 중 원가-조업도-이익(CVP)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① 일반적으로 고정비의 비율이 클수록 공헌이익률은 작다.
- ② 법인세를 고려하면 손익분기점은 증가한다.
- ③ 재무레버리지는 CVP분석과 깊은 관련이 있다.
- ④ 총원가 중에서 고정비의 비중이 크면 영업레버리지도 크다.

풀이) ① 고정비의 비율과 공헌이익률은 정의 관계를 가지며, '변동비율+공헌이익률 = 1'이므로 변동비율과는 역의 관계에 있다.  
 ② 손익분기점에서는 '총수익=총비용'('이익=0')이므로 따라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손익분기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CVP(원가-조업도-이익)분석과 관계가 깊은 것은 영업레버리지(=총비용 가운데 고정원가가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이다.  
 ④ 제품을 생산할 때 변동비 대신 고정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높은 영업레버리지를 갖는데, 영업레버리지가 높은 경우 매출액이 변할 때 영업이익이 매출 변화율보다 크게 변화는 효과를 영업레버리지효과라고 한다.

34. (주)상공은 현재 1대당 ₩250인 스마트폰을 월평균 400대 판매하고 있다. 1대당 변동비는 ₩150이고 매월 고정비는 ₩36,000이다. 판매관리자는 매달 광고비를 ₩10,000 증가시키면 ₩30,000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광고비 ₩10,000을 추가로 지불할 경우 순이익의 증감액은 얼마인가?

- ① -₩1,000
- ② ₩0
- ③ ₩1,000
- ④ ₩2,000

풀이) 아래 풀이와 같이 광고비 ₩10,000을 추가로 지불할 경우 순이익의 증감액은 ₩2,000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 (1) 현재이익  $400\text{대} \times ₩250 - 400\text{대} \times ₩150 - ₩36,000 = ₩4,000$
- (2) 예상이익  $(400\text{대} \times ₩250 + ₩30,000^{※1}) - (400\text{대} \times ₩150 + ₩18,000^{※2}) - (₩36,000 + 10,000) = ₩6,000$   
 $※1) \text{ 증가된 매출액} = 120\text{대} \times ₩250 = ₩30,000$   
 $※2) \text{ 증가된 변동비} = 120\text{대} \times ₩150 = ₩18,000$
- (3) 순이익 증감액  $= (2) - (1) = ₩2,000$

※ 별해: 증가된 이익 계산

$$\begin{aligned}
 &= \cancel{₩30,000(120\text{대} \times ₩250)} - \cancel{₩18,000(120\text{대} \times ₩150)} - 10,000 = ₩2,000 \\
 &\quad \text{(증가된 매출액)} \quad \quad \quad \text{(증가된 변동원가)} \quad \quad \text{(증가된 고정원가)} \\
 &= 120\text{대} \times \cancel{₩100(\text{단위당 공헌이익})} - \cancel{₩10,000} = ₩2,000 \\
 &\quad \quad \quad \text{(증가된 공헌이익)} \quad \quad \quad \text{(증가된 고정원가)}
 \end{aligned}$$

35. (주)대한의 당기 직접노무원  
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노무원가의 임률차이와 효율  
차이는 얼마인가?

| 표준         |       | 실제       |        |
|------------|-------|----------|--------|
| 표준생산수량     | 100단위 | 생산수량     | 105단위  |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40   | 총 직접노무원가 | ₩3,820 |
| 시간당 직접노무원가 | ₩80   | 총 직접노무원가 | 54시간   |

- |           |         |           |         |
|-----------|---------|-----------|---------|
| 임률차이      | 효율차이    | 임률차이      | 효율차이    |
| ① ₩120 불리 | ₩320 유리 | ② ₩120 유리 | ₩320 불리 |
| ③ ₩500 불리 | ₩960 유리 | ④ ₩500 유리 | ₩120 불리 |

풀이) 직접노무원가 차이분석

|                |                |                                 |
|----------------|----------------|---------------------------------|
| $AQ \times AP$ | $AQ \times SP$ | $SQ \times SP$                  |
| ₩3,820         | 54시간×₩80       | 105단위×0.5시간 <sup>※1)</sup> ×₩80 |
|                | ₩4,320         | ₩4,200                          |
|                | [ ]            | [ ]                             |
|                | 임률차이 ₩500유리    | 능률차이 ₩120불리                     |

※1) 표준 직접노무원가 = 표준생산량 × 단위당 표준 직접노무원가  
= 100단위 × @₩40 = 4,000

표준 직접노무시간 = 표준 직접노무원가 ÷ 시간당 표준직접노무원가  
= 4,000 ÷ @₩80 = 50시간

생산량 한 단위당 표준 직접노무시간 = 50시간 ÷ 100단위 = 0.5시간

36. 다음 중 표준원가계산에 의한 원재료 구입 및 투입의 회계처리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재료 투입시점에서 가격차이를 분리하면 모든 가격차이는 당기에 보고된다.  
② 원재료 투입시점에서 가격차이를 분리하면 원재료 계정은 실제가격으로 기록된다.  
③ 원재료 구입시점에서 가격차이를 분리하면 재료투입시점에서는 수량차이만 기록된다.  
④ 원재료 구입시점에서 가격차이를 분리하면 원재료 계정은 표준가격으로 기록된다.

풀이) 정답은 ①번이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를 사용(투입)시점에서도 분리할 수 있고,

구입시점에서도 분리할 수 있으나 구입시점에서 분리할 때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다.

- ① 원가차이를 가급적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다.  
② 원재료 구입시점에 가격차이를 분리하면 원재료 계정은 표준원가로 기록되기 때문에  
원가흐름의 가정이 필요없게 되어 회계처리가 간편해진다.

37. 다음은 활동기준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원가계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전통적 원가계산보다 적게 들어 경제적이다.
- ② 묶음수준활동원가는 작업준비원가, 구매주문원가 등과 같이 묶음 수에 비례하는 원가이다.
- ③ 활동은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은 활동을 소비한다는 사고는 전통적 원가계산 방법이다.
- ④ 제조간접비는 제조부문별로 상이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풀이) ① 원가계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전통적 원가계산보다 많이 소요된다.  
 ③ 활동은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은 활동을 소비한다는 사고는 활동기준원가계산 방법이다.  
 ④ 제조간접원가는 원가동인에 따라 배부하며, 비단위수준 원가동인도 많이 사용된다.

※ 전통적 원가계산 vs. 활동기준원가계산

| 구분          | 전통적 원가계산                                   | 활동기준원가계산                                                                      |
|-------------|--------------------------------------------|-------------------------------------------------------------------------------|
| 기본가정        | 각 제품이 자원을 소비한다.<br>제조간접원가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 활동은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은 활동을 소비한다.<br>제조간접원가는 생산량 외 다른 원가동인에 의해 발생하는 원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
|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 | 생산량 관련 배부기준                                | 원가동인<br>생산량과 무관한 원가동인도 많이 사용됨                                                 |
| 장점          | 원가계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다.                     | 원가계산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
| 단점          | 원가계산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 원가계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다.                                                        |

38.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대한 비교 설명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동원가계산의 당기손익은 판매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 ② 전부원가계산의 당기손익은 생산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 ③ 변동원가계산은 생산량 조절에 따른 이익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 ④ 전부원가계산은 조업도차이가 발생하나 변동원가계산은 발생하지 않는다.

풀이) 전부원가계산의 당기손익은 생산량뿐만 아니라 판매량에 의해서도 결정되며,  
 단지 생산량의 증가를 통해 이익을 증가시켜 효과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과잉생산으로 인한 재고의 누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은 ②번이다.

39.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제품원가 계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동원가계산에서는 변동제조원가만을 제품원가로 계산한다.
- ② 전부원가계산에서는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원가 및 고정판매관리비를 제품원가로 계산한다.
- ③ 변동원가계산하의 기말재고액은 전부원가계산하의 기말재고액보다 항상 크다.
- ④ 전부원가계산에서는 변동제조간접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풀이) ② 전부원가계산에서는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원가 및 고정판매관리비를 제품원가로 계산한다.

③ 변동원가계산하의 기말재고액은 전부원가계산하의 기말재고액보다 항상 크다.

④ 전부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40.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based costing, ABC)이란, 활동별원가계산으로서 원가를 활동별로 계산하여 제품원가계산이나 의사결정에 사용한다. 이러한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생산과정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일반적으로 네가지 원가계층(cost hierarchy)로 구분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단위수준활동

## ② 묶음(batch)수준활동

### ③ 노무수준활동

#### ④ 설비수준활동

풀이) 활동기준원가계산의 4가지 활동계층은 다음과 같다.

① 단위수준활동: 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수행되는 활동, 생산량에 비례하여 수행

② 묶음수준활동(배치수준활동): 생산량보다 묶음(batch) 단위로 수행되는 활동, 제품의 생산량에 관계없이 묶음 수에 비례하여 수행

③ 제품유지활동: 특정 제품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 제품의 종류에 비례하여 수행

④ 설비유지활동: 공장의 설비 전체나 제조공정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 특정 제품이 아닌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활동과 관련 있다.

DOUZONE

## 〈제3과목〉 세무회계

41. 다음은 간접세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간접세의 형식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가 된다.
- ② 간접세에 대한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 ③ 입법상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정한 조세이다.
- ④ 간접세의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풀이)** 조세는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자(담세자)의 일치 여부(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direct tax)와 간접세(indirect tax)로 구분된다. 간접세는 입법상 조세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예정되어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일치되지 않을 것(납세의무자 ≠ 담세자)으로 예견되는 조세이다. 간접세의 대표 세목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형식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실제 조세를 부담하는 자(담세자)는 소비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2.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존기간은 몇 년인가? 단, 이월결손금공제로 인하여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① 3년
- ② 5년
- ③ 7년
- ④ 10년

**풀이)** 장부와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한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2항) 정답은 ②번이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보기②번)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43. 다음 중 법인종류별 각 사업연도소득의 과세범위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리내국법인 : 국내의원천소득
- ② 비영리내국법인 : 국내의원천소득 중 일정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③ 영리외국법인 : 국내의원천소득
- ④ 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의원천소득 중 일정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풀이) 정답은 ②번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의 과세범위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내외원천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외원천소득을,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영리법인은 모든 수익사업을,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보기①번)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보기②번)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清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 7. (생략)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보기③번)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보기④번)

**44.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위탁매매의 귀속시기는 그 위탁품을 수탁자에게 인도한 날의 익금으로 한다.
-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 원천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한다.
- ③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④ 상품 등의 시용판매시 상대방에게 인도한 날의 익금으로 한다.

풀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아래와 같다.

- ① 위탁매매의 귀속시기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대한 날 (법인령 제68조 제1항 제4호)
-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 원천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한다 (법인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소득령 제45조 제1호)
- ④ 상품 등의 시용판매시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법인령 제68조 제1항 제2호)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보기④번)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보기①번)
  5.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보기②번)

2015년 법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44호, 2015. 06. 30.,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보기②번)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보기③번)

② ~ ⑤ (생략)

45. 법인의 익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② 당기 이전에 익금으로 과세된 소득은 당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다.

풀이)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 3)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은 ④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기③번)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기④번)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보기②번)
3.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보기①번)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46. 다음 세금과공과 중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 ①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가산금
- ②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 지방소득세**
-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류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풀이)** 정답은 ②번이다.

- ①번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가산금과 ④번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은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액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③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부가가치세예수금)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류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이지만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보기②번)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1호, 2014. 12. 23.,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보기③번)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47.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③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④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풀이)**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정당에 기부한 기부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정치자금법 제31조)

법인이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은 불법이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0호, 2014. 12. 23., 일부개정)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기③번)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보기④번)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보기②번)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4호, 제 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48. (주)대한의 제10기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당기의 조세부담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은 10년으로 한다.

- ① ₩5,000,000
- ② ₩10,000,000
- ③ ₩15,000,000
- ④ ₩30,000,000

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40,000,000  
 나. 미공제된 이월결손금  
   - 7기 발생분 ₩5,000,000  
   - 8기 발생분 ₩15,000,000  
   - 9기 발생분 ₩10,000,000  
 다. 미공제된 소득공제  
   - 8기 발생분 ₩5,000,000

풀이) (주)대한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②번 ₩10,000,000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40,000,000  
                   - 이월결손금               30,000,000  
                   - 비과세소득                 0  
                   - 소득공제                   0  
                                               = ₩10,000,000

※ 당기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므로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가능한 7기~9기 이월결손금을 모두 공제한다.

소득공제는 이월공제 되지 않으므로 8기분 미공제 된 소득공제는 공제할 수 없다.

49. 다음은 2014년도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하여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것이다. 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소득 : 38% 또는 90%
- ②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 : 14%
- ③ 정기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15%
- ④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풀이) 정기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이므로 정답은 15%라고 설명한 ③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5. 13., 법률 제13282호, 2015. 5. 13., 일부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보기④번)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보기③번)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보기②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보기①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실명법)**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보기①번)

50.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 중 분리과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다.

②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다.

③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포함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할 수 있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풀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제8호)과 자산·권리의 양도소득(제9호)은 제외(분류과세)되므로 정답은 ③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참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 제121조)

종합과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소득(제3호)이 있는 비거주자의 다음 소득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배당소득(제2호), 선박, 항공기 등 임대소득(제4호),  
사업소득(제5호), 인적용역소득(제6호), 근로소득(제7호), 연금소득(제8의2호),  
사용료소득(제10호), 유가증권양도소득(제11호), 기타소득(제12호)

분류과세: 퇴직소득(제8호), 자산·권리의 양도소득(제9호)

분리과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

(2) 국내사업장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51. 다음 중 반도체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A씨의 소득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① ₩300,000                      ② ₩800,000  
③ ₩2,300,000                  ④ ₩4,800,000

- 54 -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제4회 필기 모의고사 풀이 및 해설



2015년 법령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 1.~2. (생략)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53.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이다.**
- ②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등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수입금액의 3%이다.
- ④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이다.

**풀이)**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20%(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참조)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5. 13., 법률 제13282호, 2015. 5. 13., 일부개정)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기②번)**
- ② (생략)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

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략)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보기③번)

4.~5. (생략)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 12. 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보기①번)

※ 참고사항: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시기 (보기④번)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54.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속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총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다.
- ② 중도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연도 1월부터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총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다.
- ③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보험모집인의 경우이다.
- ④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으로서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한 경우라도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풀이)**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144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참조)되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③번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보험모집인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5. 13., 법률 제13282호, 2015. 5. 13., 일부개정)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보기①번, 보기②번)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기④번)

1. ~ 3. (생략)

-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보기④번)

2015년 법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44호, 2015. 6. 30.,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보기③번)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보기③번)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2015년 법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44호, 2015. 6. 30., 일부개정)

**소득세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①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② ~ ④ (생략)
- 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37조의2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보기④번)

**5. ~ 9. (생략)**

-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기④번)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 ① (생략)
-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44호, 2015. 6. 30., 일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 ① ~ ④ (생략)
-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보기③번)

55. 개인사업자 갑씨의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상가임대: 임대기간 2014.8.1 ~ 2015.7.31

나. 월임대료: ₩1,000,000(일시불 ₩12,000,000을 수령함)

다. 보증금: 없음

- ① ₩3,000,000                      ② ₩5,000,000  
③ ₩6,000,000                      ④ ₩12,000,000

**풀이)** 정답은 ②번이다.

개인사업자 갑씨의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부가령 제65조 제5항 참조)

$$= ₩12,000,000(\text{선세금}) \times (5\text{개월} \div 12\text{개월})$$
$$= \text{W}5,000,000$$

2015년 법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 2015. 2. 3.,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 ~ ④ (생략)

⑤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6. 사업자가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5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이 완료되는 때
- ②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③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④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풀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공급시기는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닌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참조)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은 ①번이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1호, 2014. 12. 23.,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 2015. 2. 3.,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 구분                                                 | 공급시기                            |
|----------------------------------------------------|---------------------------------|
|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br>(보기④번) |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보기③번)           |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보기①번)           |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보기②번)

**57.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법정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있다.
- ②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있다.
- ③ 부동산 중개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있다.
- ④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다.

**풀이)**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부가법 §60 ⑤ 참조)하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1호, 2014. 12. 23.,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보기①번)**
  - 2. (생략)
- ② (생략)
  - 1. ~ 5. (생략)
-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보기②번)**
  -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보기②번)**
- ⑤ ~ ⑦ (생략)
- ⑧ 사업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보기③번) (보기④번)**
- ⑨ (생략)
  - 1. ~ 4. (생략)



가. 매출내역(부가가치세 포함)(2014.1.1~12.31)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 ₩15,000,000
- 현금판매분 : ₩9,000,000

나. 매입내역(부가가치세 포함)(2014.1.1~12.31)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분 : ₩11,000,000
- 세금계산서 수령분 : ₩5,500,000

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공제율은 13/1,000으로 한다.

라.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30%이다.

- 풀이) 1. 납부세액 = ₩720,000  

$$= (15,000,000 + 9,000,000) \times 30\% \times 10\%$$
2. 공제세액 = ((1) + (2)) = ₩645,000  
(1)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11,000,000 + 5,500,000) \times 10/110 \times 30\% = 450,000$$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15,000,000 \times 1.3\% = 195,000$$
3. 차감 납부할 세액 = (1 - 2)  

$$= ₩720,000 - ₩645,000$$

$$= ₩75,000 \quad \text{정답은 ④번이다.}$$

- ① 공급가액과 세액은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 ②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③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 ④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1호, 2014. 12. 23.,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보기①번)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5년 법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 2015. 2. 3.,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보기③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폐업시 잔존재화**

-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보기④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7조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①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보기②번)

**DOUZONE**

#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모의고사

## 제4회 모의고사 문제 및 풀이 해설서

(비매품)

DOUZONE

- ※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 모의고사의 저작권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에 있으며, 풀이해설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더존비즈온에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의 허가를 받아 전산회계운용사 학습지원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이용과 출판인쇄 및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더존지식서비스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DOUZONE**

